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9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REDACTED] 시장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¹⁾.

1) 원고들은 소장에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5. 29. 원고들에게 한 2018년 취득세 100,435,030원 중 75,326,280원, 지방교육세 9,686,400원 중 7,264,780원, 농어촌 특별소비세 5,200,290원 중 2,689,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은 2018. 5. 29. 위와 같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2019. 1. 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19. 1.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으로 선행하여 본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5. 29. 임의경매절차(■■■■ 법원 ■■■■ 지원 C)를 통해 ■■■■ 시 D 공장용지 5,194.4㎡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209.96㎡(E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495.83㎡(F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3층 사무소 1층 식당 164.4㎡, 2층 사무실 169.8㎡, 3층 사무소 169.8㎡(G동)의 각 2분의 1지분 및 수전설비 외 기계장비(이하, 위 토지 및 각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기계장비까지 포함한 것을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5. 30. 동업계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자로서 같은 날 ■■■■ 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업태 제조업, 종목 배전반/구조용 금속제품/금속도장 및 표면처리를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I'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8. 5. 29.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금액 2,421,602,2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6,864,080원, 지방교육세 9,686,400원, 농어촌특별세 4,843,200원, 합계 111,393,6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수전설비 외 기계장비의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금액 178,547,7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70,950원, 농어촌특별세 357,090원, 합계 3,928,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의 소유권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을 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창업일 및 이 사건 공장 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한 것은 재화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공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재화의 제조를 시작한 행위에 포함되고, 사업자등록시 이 사건 공장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한 날인 2018. 5. 29.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한 날은 경락대금 지급일으로써 등기촉탁일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8. 5. 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장 등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한 날은 실제 재화의 제조가 가능한 시점으로써 이 사건 공장 등의 인도일인 2018. 6. 11.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등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설립한 'I'은 원고 A이 운영하는 'J'과 원고 B이 운영하는 'K'의 사업확장이 아닌 새로운 사업체로서 창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들의 사업확장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 등의 취득일인 2018. 5. 2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2019. 1. 8.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2019. 1. 9.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제1조 및 제8조에 따라 위 취득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중소기업창업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1호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을 창업하였음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2018. 5. 30.) 이전인 2018. 5. 29.에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 개시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만을 준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창업일 내지 사업 개시일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없고,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그 사업 개시일로 보게 되어 원고들의 창업일은 앞서 본 사업자등록일 보다 더 이후의 시점이 되므로²⁾, 이 사건 공장 등의 취득일 이후에 원고들이 'I'을 창업한 것은 마찬가지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2)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기재를 보더라도, 개업연월일이 '2018. 6. 1.'로 적혀 있다.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공장 등의 취득일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호, 제1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한 날은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인 2018. 5. 29.임이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 등의 취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데도 피고가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창업일 전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판사



판사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제10조(과세표준)

-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0

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끝.